

## V. 金融인프라의 變化

### 1. 支給決濟시스템

#### 가. 支給決濟動向

##### (거액결제시스템)

2004년 상반기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 간 원화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6,532건, 106조 4,915억원으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2.1%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2.8% 늘어났다. 거액결제건수의 감소는 2003년 8월부터 소액 국고금지급이 종전의 건별이체에서 국고계정별 및 금융기관별 일괄이체방식으로 변경된 영향이며 금액의 증가는 외은지점의 외화운용을 위한 콜차입 증가 등으로 콜거래 및 외환거래용 총액 결제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실시간 총액결제는 금융기관 간 콜거래 및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4.9%, 29.5% 늘어났다. 총액결제중 일반자금이체는 장외채권결제의 DVP시스템 이용 등으로 건수가 줄었으나 콜거래시스템을 통한 총액결제는 이용기관 확대<sup>1)</sup>, 외은지점 콜차입 확대 등으로 건수 및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DVP시스템을 통한 총액결제는 2003년 6월 채권결제일이 거래당일에서

〈표 V-1〉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sup>1)</sup>

	(천건, 조원, %)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감률
<b>(건 수)</b>			
총액결제 <sup>2)</sup>	4.4(65.5)	5.0(76.9)	14.9
(일반자금이체시스템)	3.8(57.6)	3.3(50.9)	-13.4
(콜거래시스템)	0.2(2.9)	0.4(5.8)	96.2
(DVP시스템)	0.3(5.0)	1.3(20.2)	293.7
차액결제 <sup>3)</sup>	0.7(10.1)	0.6(9.8)	-5.5
국고금수급 등 <sup>4)</sup>	1.6(24.4)	0.9(13.4)	-46.4
합계	6.7(100.0)	6.5(100.0)	-2.1
<b>외화자금이체</b>			
	0.01(-)	0.01(-)	0.0
<b>(금액)</b>			
총액결제 <sup>2)</sup>	68.5(79.0)	88.7(83.3)	29.5
(일반자금이체시스템)	56.0(64.6)	58.4(54.8)	4.1
(콜거래시스템)	10.3(11.9)	25.1(23.5)	143.4
(DVP시스템)	2.2(2.5)	5.3(5.0)	142.5
차액결제 <sup>3)</sup>	14.2(16.3)	13.1(12.3)	-7.8
국고금수급 등 <sup>4)</sup>	4.0(4.6)	4.7(4.5)	17.0
합계	86.7(100.0)	106.5(100.0)	22.8
<b>외화자금이체</b>			
(백만달러)	0.1(-)	0.2(-)	33.4

- 주 : 1) 일평균 기준, ( )내는 구성비  
 2) 금융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하여 한국은행에 자금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은행의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정에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건별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한 자금결제  
 3)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금융기관 고객간 자금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채권·채무의 정산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정시점(11:30 및 14:30)에서의 자금결제  
 4)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국공채 거래 등

1) 2003년 7월 콜거래시스템 이용대상을 모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투신운용사도 참가기관인 수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V-2〉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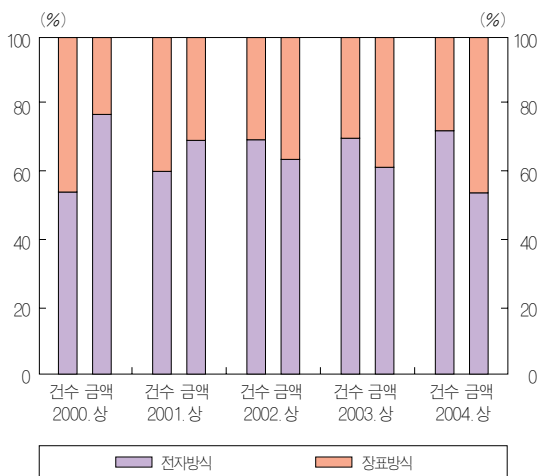
(백만건, 조원, %)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감률
〈건 수〉			
장 표 방 식	6.0(29.9)	5.5(27.8)	-8.0
(어 음 · 수 표)	4.1(20.2)	3.7(18.6)	-9.1
(지로일반계좌이체)	2.0(9.7)	1.8(9.3)	-5.8
전 자 방 식	14.1(70.1)	14.3(72.2)	1.7
(은 행 공 동 망) <sup>3)</sup>	6.2(30.6)	6.4(32.2)	4.0
(전 자 식 지 로) <sup>4)</sup>	1.8(8.9)	1.9(9.7)	8.2
(신 용 카 드) <sup>5)</sup>	6.2(30.7)	6.0(30.2)	-2.5
합 계	20.1(100.0)	19.9(100.0)	-1.2
〈금 액〉			
장 표 방 식	22.4(62.0)	16.5(54.4)	-26.3
(어 음 · 수 표)	22.2(61.3)	16.3(53.5)	-26.7
(지로일반계좌이체)	0.3(0.7)	0.3(0.9)	1.6
전 자 방 식	13.7(38.0)	13.9(45.6)	1.0
(은 행 공 동 망) <sup>3)</sup>	12.0(33.2)	12.6(41.6)	5.3
(전 자 식 지 로) <sup>4)</sup>	0.2(0.6)	0.3(0.8)	17.7
(신 용 카 드) <sup>5)</sup>	1.5(4.1)	1.0(3.2)	-35.6
합 계	36.1(100.0)	30.4(100.0)	-16.0

- 주: 1) 일평균 기준, ( )내는 구성비  
 2) 서로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간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며 금융기관간 지급결제는 금융결제원에서의 청산과정을 거쳐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짐  
 3)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공통의 전산망을 통해 자금이체 등을 처리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공동망, 타행환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및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 8개 소액결제시스템  
 4) 자동계좌이체, 납부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5) 은행계 및 비은행계 신용카드 사용 건수 및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결제는 은행공동망, 전자식 지로 등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그림 V-1〉

소액결제방식별 구성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익일로 연장된 이후 장외채권거래의 DVP방식 결제가 활발해진 데다 2004년 4월 DVP 대상거래가 확대<sup>2)</sup>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규모는 소액결제규모의 감소, 2003년 5월 하나은행 및 (구)서울은행의 전산시스템 통합 등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국고금 수급 등은 2003년 1월 국고금 실시간 계좌이체제도의 도입으로 건별처리 방식으로 바뀐 국고금지급중 1억원 미만 소액 국고금의 경우 동년 8월부터 일괄처리방식으로 환원되면서 건수가 전년 상반기대비 크게 줄었으나 금액은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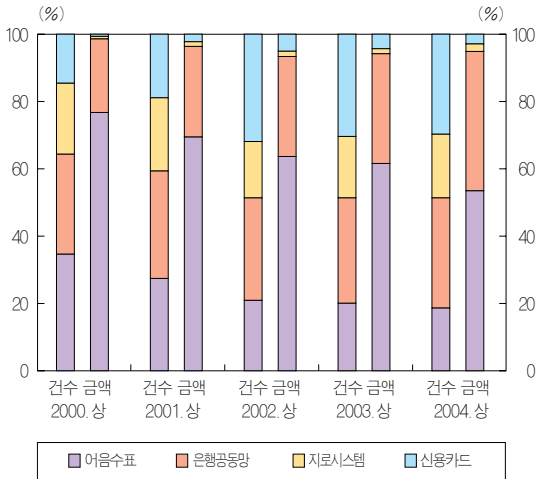
2004년 상반기중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규모는 일평균 1,986만건, 30조 3,668억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전년 상반기보다 1.2%, 16.0% 각각 감소하였다. 소액결제규모의 감소는 은행공동망 이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과 어음·수표에 의한 결제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하였다.

이를 결제방식별로 보면 어음·수표 등 장표방식 결제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전자방식 결제가 신용카드 사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은행공동망 이용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소액결제중 전자방식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기준 72.2%, 금액기준 45.6%로 전년 상반

2)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거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거래 추가 등으로 DVP 이용실적이 2004년 1/4분기 중의 일평균 886건, 4.5조원에서 2/4분기에는 1,740건, 6.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V-2〉

소액결제시스템별 구성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표 V-3〉

교환순지급액 발생현황

	(10억원. %)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감률
<b>(오전차액결제)</b>			
최대 교환순지급액 <sup>1)</sup>	1,520.7	1,607.8	5.7
최대 평균 교환순지급액 <sup>2)</sup>	614.1	694.0	13.0
은행별 평균 교환순지급액 합계	2,179.0	2,256.4	3.6
<b>(오후차액결제)</b>			
최대 교환순지급액 <sup>1)</sup>	5,865.0	4,346.8	-25.9
최대 평균 교환순지급액 <sup>2)</sup>	1,104.0	1,117.1	1.2
은행별 평균 교환순지급액 합계	6,747.9	5,760.1	-14.6

주 : 1) 일별 및 참가은행별 교환순지급액중 최대금액  
2) 참가은행별 평균 교환순지급액중 최대금액

기 수준을 상회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별 결제비중을 건수기준으로 보면 은행공동망을 통한 결제비중이 전년 상반기의 30.6%에서 32.2%로 확대되었고 지로시스템<sup>3)</sup>의 경우에도 19.0%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신용카드 및 어음·수표에 의한 결제비중은 축소되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은행공동망을 통한 결제비중이 전년의 33.2%에서 41.6%로 상승한 반면 어음·수표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비중은 줄어들었다.

## 나. 決濟리스크動向

2004년 상반기중 차액결제 참가기관별 평균 교환순지급액<sup>4)</sup>의 단순합계는 오전차액결제<sup>5)</sup>가 2조 2,564억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3.6% 증가한 반면 오후차액결제<sup>6)</sup>는 어음·수표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5조 7,601억원에 머물렀다.

차액결제시 교환순지급은행이 결제보장을 위해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필요담보증권규모는 2004년 6월말 현재 5조 5,609억원으로 전년동월말보다 1조 733억원(7.4%) 늘어났다. 이는 참가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전자금융·타행

- 3) 장표방식인 지로일반계좌이체와 전자방식인 전자식 지로(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로 구성된다.
- 4) 차액결제시점별 교환순지급액 합계액 ÷ 교환순지급액 발생일수
- 5)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스템(지로시스템, 전자금융·타행환·현금자동인출기·자금관리서비스·직불카드·지방은행·전자화폐공동망, B2C 및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은행간 자금거래의 교환차액 및 이에 따른 자금조정금액이 11:30에 한국은행의 참가은행별 당좌예금계정에서 최종결제된다.
- 6)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어음·수표의 교환차액 및 자기앞수표 자금조정금액이 14:30에 한국은행의 참가은행별 당좌예금계정에서 최종결제된다.

환·CD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간 자금이체의 증가에 대비하여 순채무한도를 증액하였기 때문이다.

〈표 V-4〉

## 필요담보증권규모 및 순채무한도

(10억원, %)

	2003년 6월말	2004년 6월말	증감률
필요담보증권금액	4,487.6	5,560.9	23.9
은행별 순채무한도 합계	11,318.3	12,616.3	11.5

2004년 6월말 현재 차액결제 참가기관(26개 은행)의 순채무한도는 12조 6,163억원으로 전년동월말의 11조 3,183억원에 비해 11.5% 늘어났다. 한편 2004년 상반기중 참가기관별 순채무한도 최대소진율의 단순평균은 67.1%로 전년상반기의 55.0%보다 높아졌다.

## 다. 支給決済制度의 改善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발행은행과 지급은행이 상이한 자기앞수표 등의 교환에 따른 은행간 이해득실을 상쇄시켜주는 자금조정규모가 주5일제 시행 이후 적수누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결제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자기앞수표의 자금조정방식<sup>7)</sup>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 교환과 관련된 은행간 차액결제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그만큼 은행의 결제자금 부담이 해소되고 결제리스크도 낮아지게 되었다.

7) A은행이 고객으로부터 B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 고객에게는 당일중 현금(또는 예금에 대한 이자)을 지급하지만 B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수취하는 것은 은행간 차액결제를 통해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므로 은행간 차액결제시 A은행의 B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지급금액이 B은행의 A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지급금액보다 많으면 A은행은 그 차액만큼 자금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자금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은행은 그 차액의 적수만큼을 A은행에 무부리 콜론으로 제공한 후 다음 영업일에 상환받게 되는데 이를 적수보전방식이라 하며 적수 대신 이자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자정산방식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금년 8월에는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소지자가 수표발행 은행이 아닌 타행의 창구에서 수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도난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고객앞 자기앞수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은행은 다음 영업일에 수표발행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그 기간동안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자기앞수표의 실시간 현금지급서비스에 대한 순채무한도를 설정케 하여 동 한도의 30%에 상당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였다.

또한 외환을 매매할 때 국가간 시차 때문에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말 가동을 목표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3월에는 미국 CLS은행<sup>8)</sup>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을 연결하는 CLS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에는 CLS은행이 원·외화간 동시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원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관련규정<sup>9)</sup>을 개정하였다. 또한

8)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전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를 목표로 1999년 17개국 66개 금융기관이 뉴욕에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 민간 은행으로서 2002년 9월부터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가동하였다. CLS은행은 처음에는 미국, 일본, 영국, 유로,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7개국 통화간 외환동시결제를 시행하다가 2003년 9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4개국 통화를 추가한 데 이어 금년말경에는 우리나라, 홍콩,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통화를 추가할 예정이다.

9)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등이 있다.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한은금융망과 연계하여 운영됨에 따라 동 시스템을 감시정도가 가장 높은 핵심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되 CLS은행이 국외에 소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등 외국중앙은행에 의한 대체 감시를 인정하였다.

한편 2004년 6월에는 전산장애나 재해 등으로 한은금융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결제업무를 수작업으로 대체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한은금융망 업무 담당직원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는 한편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시에도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한은금융망의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금년말까지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컨설팅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 강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금년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지급결제시스템부터 평가하는 작업에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 원칙’ 및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의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권고’ 등을 근간으로 하되 지급결제시스템을 핵심, 중요 및 기타로 나누어 차등화하였다. 현재는 6개 핵심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한은금융망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 평가작업을 완료하여

〈표 V-5〉

평가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분류

핵심 지급결제시스템 <sup>1)</sup> (6개 시스템)	한은금융망	
	은 행 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채권장외시장 결제시스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sup>2)</sup> (9개 시스템)	은 행 공동망	CM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B2C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B2B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지모시스템	
	유가증권시장 증권결제시스템	
협회중개시장 증권결제시스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sup>3)</sup>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비은행전자화폐결제시스템	
	이동통신모바일결제시스템 등	

- 주 : 1) 해당시스템에서 결제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2)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3)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중 핵심 또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보고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와 더불어 시스템의 운영상황과 참가기관 등의 지급결제업무 동향을 파악하여 이상 징후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2004년 6월말경에는 한미은행 파업으로 인해 지급결제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내 「한미은행 파업관련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한은 금융망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파업기간중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직원을 한미은행에 파견하였다.

〈참고 V-1〉

###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참가은행이 결제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액 결제가 적시에 완결될 수 있도록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예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순채무한도제도)

A은행의 고객이 B은행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A은행은 송금액을 당일 고객에게 지급한 후 다음 영업일에 B은행과 차액결제를 통해 자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A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현금자동인출기·타행환·전자금융공동망 등을 통한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참가은행으로 하여금 순채무액의 상한선인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미결제채무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도)

차액결제 참가은행으로 하여금 순채무한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격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그 은행이 결제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장가격으로 처분하여 결제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

차액결제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은행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담보증권만으로는 결제자금 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여타 참가은행이 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참가은행별 분담금은 각 은행의 필요담보증권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어음교환의 경우에는 재교환이 이루어져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2. 國內外 金融制度

### 가. 國內部門

####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 마련)

〈표 V-6〉

####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내용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미준수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
  - 동 비율 준수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추가배정비율은 현행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반영하는 은행 평가방식 변경
  -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
- Network loan제도를 통한 대출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준하여 총액한도대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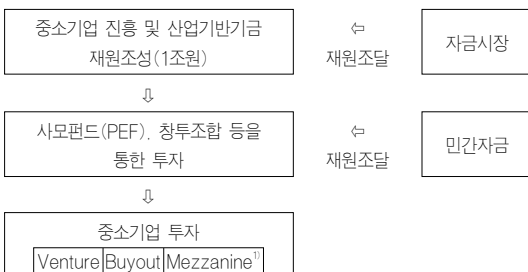
\* 2004년 8월 1일 시행

정부는 2004년 7월 7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①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② 시장의 선별기능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명확히 선정하며, ③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④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은 창업준비기부터 소멸시까지 일관 관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이 적정 수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Network loan제도<sup>10)</sup>의 도입 및 이의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7〉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 방안



주 :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방식

시장의 선별기능을 통한 지원대상기업의 명확한 선정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조직혁신을 통한 기술평가기능 활성화,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설립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수단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10) 2004년 8월 2일부터 기업은행이 시행중인 중소기업 생산·구매자금 지원방식으로서 계약체결시점에 자금을 지원한다.

및 금융부문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 활성화 및 장기 시설자금 공급 확대, 대출만기의 장기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쿠폰(coupon)방식<sup>11)</sup>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중소기업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사 부실채권 감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2004년 6월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채권에 대한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4년 6월 연체율 발표시부터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이외에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한대출도 연체채권에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준에 의해 산출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04년 6월말 현재 25.12%로 2003년말 28.28%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 신용카드사 연체율

(%)

	BC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전체
2003. 12월	12.62	33.28	27.12	23.55	3.86	11.09	28.28
2004. 6월	8.23	31.26	23.62	19.97	2.60	9.80	25.12

자료 : 금융감독원

또한, 금융감독원은 2004년 7월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에 의한 2004년 6월말 기준 연체율이 경영지도비율 10%를 상회하는 LG, 삼성, 현대 등 3개 카드사와 연체율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에 의하면 이들 3개 카드사

11)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경영서비스 지원쿠폰을 저가에 판매하고 중소기업은 동 쿠폰을 서비스지원기관에 서비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는 2006년말까지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비절감,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 도입)

<표 V-9>

펀드 형태별 비교

	공모펀드	사모펀드	사모M&A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 인원	· 30인 이상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현황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도입 예정
투자 규모	· 계약형: 95조 · 회사형: 3.6조	· 계약형: 56조 · 회사형: 7.2조	· 계약형: 56조 · 회사형: 7.2조	· 계약형: 56조 · 회사형: 7.2조
투자 범위	자본이득을 위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기업인수· 합병	기업인수· 합병, 경영권 참여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은 금지
형태	· 투자신탁 (계약형) · 투자회사 (회사형) *회사형은 주식회사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주식회사	합자회사
은행 지분 소유	산업자본의 펀드투자비율 4% 초과시 은행지분 소유제한 (4%)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 30인 미만 · 적격기관 투자자로만 구성	산업자본의 펀드투자비율 10%이하이고 유한책임이면 은행지분소유 10%허용
지주 회사 규제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유예 (10년)

자료 : 재정경제부

국회는 2004년 9월 10일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 (Private Equity Fund)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접투자기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원 가입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 준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10년간 적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은행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일정기준<sup>12)</sup>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지

주회사법 및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였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4% 이상의 은행지분 보유(변동 포함)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원의 성명, 출자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 12) ①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다른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지분의 합이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나. 海外部門

### (BIS 신자기자본규제협약 최종안 확정)

국제결제은행(BIS)은 2004년 6월 26일 G-10국가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신바젤협약 최종안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신바젤협약은 당초 계획대로 2006년말부터 바젤위원회 13개 회원국<sup>13)</sup>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바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측정방법중 가장 선진화된 방법<sup>14)</sup>은 1년간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말부터 시행기로 하였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신바젤협약 시행에 앞서 1~2년간의 시험적용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최종 시행에 앞서 필요시 자기자본산출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신용 및 운용위험 관리체제와 위험관리 문화가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자기자본 적립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5)</sup>. 대출 부문별 자기자본 적립부담은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13)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벨기에

14) 신용위험측정방식중 고급내부등급평가방식(AIRB; advanced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과 운영위험측정방식중 고급측정방식(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15) 2004년 3/4분기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서베이 특별조사 결과

## (중국의 은행산업 개방 확대)

〈표 V-10〉

##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위안화 업무 개방 일정

개방일정	개방 내용	
	대 상	지 역
가입직후(2001. 12)	외자기업 허용	上海, 深圳, 天津, 大連
1년(2002. 12) 이내		廣州, 珠海, 青島, 南京, 武漢
2년(2003. 12) 이내	중국기업 허용	濟南, 福州, 成都, 重慶
3년(2004. 12) 이내		北京, 昆明, 廈門
4년(2005. 12) 이내		汕頭, 寧波, 瀋陽, 西安
5년(2006. 12) 이내	중국개인 허용	지역 제한 폐지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시장 개방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영업지역 및 업무범위 제한의 단계적 해제, 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 은행산업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WTO 가입 직후 외국계 은행의 외화업무에 대해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중국기업 및 중국인에 대해서도 외화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 허용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 9월 현재 13개 지역에서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가 허용되고 있으며, 금년중 北京, 昆明, 廈門 등 3개 지역이 이에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위안화 업무의 거래대상도 2003년중 종전 외자기업 이외에 중국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2006년말까지는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지역 및 고객 제한이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점포 설립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점포를 개설한 후 1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점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또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중국 기업 및 개인 대상 위안화 영업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각각 4억 → 3억위안 및 6억 → 5억위안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내 ‘한은DB>발간자료>반기자료>금융안정보고서’)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은행국 안정분석팀(전화 : 750-6861, 팩스 : 750-6892, E-Mail : [finstabl@bok.or.kr](mailto:finstabl@bok.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